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시 신고여부

당사는 아파트공사 감리회사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나 안전관리비 증가분에 대하여 해당관서나 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당사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 우선으로 질의 해본바 신고할 의무는 없고, 시공사에서 변경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접수받아 보관만 하면 된다고 하는바 그것이 법규상에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하나, 변경된 안전관리비 계상내용 등에 대해 별도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회시자료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종합검진시행시 일반건강진단결과표서식의 구비 유무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 대신 종합검진을 실시할 경우에 일반검진 시행 후 작성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별지 제22호(1)의 서식을 반드시 구비해야하는지와 2차검진 대상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회사 모든직원들(특수검진대상자외)이 종합검진을 실시하게 되어기에 공단에 사업장 건강검진 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건강검진제외서를 작성 제출 하였을 시에는 결과지를 보관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검진을 완료 후 결과지를 수검자본인과 사업장에서 각 한부씩 교부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종합검진검사항목 내에는 일반검진 및 2차검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모든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별지 제 22호 (1)의 서식을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다른 양식도 가능한지요?

질의2. 별지 22호(1)의 서식에 의한 유소견자가 종합검진에도 포함되어 있는 2차검진을 반드시 재실시해야 하는지요?

⇒ 질의1 답변 : 법령에 특별히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한 법정서식에 의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1차검사(필수 검사)와 2차 검사(선택검사)의 두 단계로 실시되며, 각각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등에 정한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따라 1, 2차 검진을 동시에 실시하였다면, 별도로 2차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리자 출장비 정산 가능여부

시공중인 현장이 철도역사에 위치하여 현장이 날이갈수록 지방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현



장으로 매일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안전관리자 출장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가능한지요?

- ☞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고시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 별표2, 제1항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해당여부

종합병원(직원1,900여명, 안전보건관리체제 갖춤)에서 진료업무 일부가 동일지역 안에서 장소적으로 분리(거리 300m, 지번 다름)되고, 대표자의 명을 받은 보직자(관리자)가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시설을 관리하며 소속직원(150여명)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경우에 분리된 장소에 별도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바
- 사업장 정의는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 규모, 노무관리, 회계, 인사, 조직,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할 때 서로 연관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근거리에서 있는 출장소, 사업소, 분국, 분소 등과 같이 인력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동 기관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주된 기관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병원의 진료업무가 위의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개의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실사를 통해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5 ton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 운전자격은 어떻게되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2항에 보면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원 자격사항이 나오는데 문구가 5 ton이상의 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어 5 ton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은 자격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아무나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5 ton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무자격자가 운전해도 되는지요?

- ☞ 질의의 타워크레인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이 필요하나,
- 5톤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에 따른 별도의 자격은 필요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회시자료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